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 편익 향상 및 부과절차 등 제도상 미비점 보완 -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 및 부과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훈령의 법적 적합성, 명료성 등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이 개정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 및 부과절차 등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훈령의 법적 적합성, 명료성 등을 개선하기 위함임.

II.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제8조)

-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연장(15일→20일)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심의 등 행정청의 사유로 자진납부기간 경과 시 자진납부 기회 재부여 근거 신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감경사유 확인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감경신청이 없어도 감경 적용 근거 신설

2.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확인·조사절차 개선(제7조, 제8조, 제13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위반행위 확인 시 e-mail, fax 등 간소한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필요 시 위반행위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절차 간소화
- e-mail 등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근거 신설
- 과태료 위반행위 누적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절차 명확화

3. 훈령의 법적합성, 명료성 등 개선

- 관세법 제277조의3 신설('22.12.31) 등 관세법령 개정 사항 반영
- 행정규칙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의 구조, 표현 등을 정비

III. 시행일자

2023. 12. 22.(금)

| 첨부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전부개정)_입안계획서

[붙임2]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전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 Contact



정현욱 관세사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장수한 관세사

T 02-6011-3091
E shjang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